

# 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효력발생일:** 2016년 2월 25일(목)
- **대상 펀드:**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 사항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 내용 추가	<b>(신설)</b>	<b>13.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b>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 내용 추가	<b>(신설)</b>	<p>※ <b>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b></p> <p><b>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p> <p><b>-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 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b></p> <p><b>[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 사항]</b></p> <p><b>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p>	<p>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 내용 추가</p>	<p><b>(신설)</b></p>	<p><b>(5)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b> <u>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 자세한 관련 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 표 1 참조</p>
---	--------------------------------------	--------------------	---

□ 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p>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p>	<p>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 내용 추가</p>	<p><b>(신설)</b></p>	<p><u>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가능한 동 투자신탁의 경우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포함)은 투자자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u></p>
<p>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p>	<p>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관련 세제 내용 추가</p>	<p><b>(신설)</b></p>	<p><u>④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됩니다.</u>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 표1 참조</p>

[표1]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